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 현물 ETF 근거 마련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09호)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17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총괄	5
2. 조문별 검토	11
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11
나. 가상자산의 신탁 근거 마련 등	16
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허용	27

I. 제안경위

1. 송석준의원안

가.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6. 17.

다. 회 부 일 : 2025. 6. 18.

2. 민병덕의원안

가.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5. 6. 27.

다. 회 부 일 : 2025. 6.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송석준의원안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2. 민병덕의원안

가. 제안이유

현재 가상자산은 디지털 거래의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를 승인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가상자산시장 및 금융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음.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등 건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 도입을 넘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4조제10항).
- 2)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
- 3)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 4)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5)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6조의2).

Ⅲ. 검토의견

1. 총괄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Traded Fund, 이하 “ETF”)는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거래소에서 상장·거래되는 펀드를 의미함.

○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오직 투자신탁¹⁾의 형태로 설정되거나 투자회사²⁾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TF의 법적성격은 ETF가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³⁾, 투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⁴⁾이자 「상법」상 주식⁵⁾에 해당함.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 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임. 따라서 “계약형”이라고도 불리는 투자신탁은 법인격과 같은 실체가 없고, 투자자에게 수익권이 표시된 증서인 수익증권을 발행함.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ETF가 수익증권(투자신탁) 형태로 발행됨.

2)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상근하는 직원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지만 법인격, 즉 실체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따라서 “회사형”이라 불리고, 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을 발행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5) 이상복, 『자본시장법』, 박영사, 2021, pp.175~176.

- 현행법은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② 환매가 허용될 것, ③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을 ETF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⁶⁾
- 2024년말 기준으로 국내 ETF 시장에 총 935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으며, 순자산가치총액은 173.6조원, 일평균 거래대금은 3.5조원 수준임.

[표1] ETF·ETN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ETF	상장종목 수	468	533	666	812	935
	순자산가치총액	520,365	739,675	785,116	1,210,657	1,735,639
	일평균거래대금	38,433	29,389	27,828	32,078	34,810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한편,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 현물 ETF”는 ETF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는 ETF를 의미함.⁷⁾
- 캐나다가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미국(2024. 1.), 홍콩(2024. 4.), 영국(2024. 5.)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였음.

[표2]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동향

구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동향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 ○ SEC는 2024년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위한 거래소 상장규정을 승인 하였으며, 2024년 7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
홍콩	○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는 2024년 4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영국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2024년 5월 비트코인 현물 ETN과 이더리움 현물 ETN을 승인 (기관투자자 한정 승인)

(자료: 금융위원회)

7) 김재환,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비트코인 현물 ETF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8(2), 2025., p.280.

○ 한편,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①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⁸⁾에 해당하지 않고, ②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가 금지⁹⁾되고 있어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수탁 근거를 마련하며,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허용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9) (2017. 9.)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 관여 금지

(2017. 12.) 가상통화 긴급대책: 금융회사의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2018. 1. ~ 2021. 12.)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금지

- 먼저, 우리나라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를 통하여 인프라 선진화, 시장 접근성 개선, 신규 투자 기회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함.¹⁰⁾
- 또한, 제도권 시장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 거래될 경우 규제당국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선물 가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¹¹⁾
- 반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연계에 따른 위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¹²⁾
-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을 운용하거나 중개, 투자하게 되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10) 정보성,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자본시장포커스(2024-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4.

11) 이보미,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금융브리프(33-13)」, 한국금융연구원, 2024. 6.

12) 이보미,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금융브리프(33-13)」, 한국금융연구원, 2024. 6.

될 경우 금융회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하여 전통 자산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자본 일부가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가상자산 현물 ETF의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포함

□ 개정안은 “기초자산”의 대상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0항제5호 신설).

현행	민병덕의원안
제4조(증권) ① ~ ⑨ (생략)	제4조(증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 현행법 제234조¹³⁾는 ETF의 요건을 ①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종류에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② 환매가 허용될 것, ③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4조제10항은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가상자산 현물 ETF의 설정 또는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설정 또는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가 출시·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은 그 기대효과와 함께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에서 기초자산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자산의 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초자산의 대상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기초자산으로 허용되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연계상품도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바, 이 경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이 제한 없이 출시·유통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그 허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둘째, 가상자산 현물 ETF가 제도화될 경우 기초자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234조제1호제1항 후단¹⁵⁾은 ETF의 요건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¹⁶⁾는 그 요건을 ① 거래소, 외국 거

14) 금융위원회는 미국에서도 현물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공모 증권상품은 사실상 비트코인·이더리움 각각에 100% 투자하는 현물 ETF 뿐이며, ELS, ETN 등 파생결합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3.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
 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
 수일 것, ② 이 가격 또는 지수가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
 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③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
 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 변화에 연동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장”을 ①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② 기타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위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
 로 인정하는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요건”을 ① 거래소 시장 등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②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③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
 해 산출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⁶⁾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17)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
 한 시장

-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글로벌 주요 거래소 대비 높게 형성되거나(소위 김치프리미엄 현상) 반대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소위 역프리미엄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¹⁸⁾,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시 기초자산 가격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
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18) 김재환,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비트코인 현물 ETF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8(2), 2025., p.280.

나. 가상자산의 신탁 근거 마련 등

□ 개정안은 신탁가능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신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탁재산인 가상자산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신탁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 유지 여부, 신탁재산의 적절한 관리 여부 등의 주기적 점검 의무를 부여하며, 점검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 법 또는 위탁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및 필요한 조치 이행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및 제109조의2 신설).

○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자, 이 법 또는 위탁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 신설).

현행	송석준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 7. (생략)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 7. (생략)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송석준의원안	민병덕의원안
<u><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8. 제4조제10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 ④ (현행과 같음)	8. 제4조제10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수탁한 신탁 재산인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자를 말하 며, 이하 “가상자산사 업자”라 한다)에게 위 탁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를 위탁하 기 전에 미리 신탁계 약의 위탁자(신탁계약 이 체결된 후에는 수 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2. 신탁업자가 해당 업 무를 위탁받는 가상자 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

현행	송석준의원안	민병덕의원안
		<u>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u> 3.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등 요건의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위탁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

현행	송석준의원안	민병덕의원안
		<u>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u>④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위탁계약에 대하여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u>

현행	송석준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19의2. ~ 19의8.</u> (생략) 20. ~ 64. (생략)		<u>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6조(벌칙) ----- ----- ----- ----- 1. ~ 19. (현행과 같음) <u>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u> <u>19의3. 제10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신탁업자</u> <u>19의4. 제10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u> <u>19의5. ~ 19의11.</u> (현행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와 같음) 20. ~ 64. (현행과 같음)

□ 먼저, 개정안 제103조제1항제8호는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이하 “신탁가능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내용임.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신탁가능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자본시장법」 제103조제1항19)에서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의 신탁가능재산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현행법 제245조²⁰⁾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제2편 제4장 제2절 제4관(제102조부터 제115조까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제103조제1항이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을 허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 제4장 제2절 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현행법 제12조²¹⁾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행령 별표 1²²⁾은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를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가상자산 수탁업무를 위한 인가단위의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2) 신탁업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억원)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 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반 신탁 수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보관방법, 운용방법,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²³⁾가 필요하고,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 2단계법」상 가상자산 관련업 신설 문제와 함께 논의²⁴⁾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개정안 제109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한 신탁재산인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신탁업자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런데, 현행법 제42조제4항²⁵⁾은 신탁업자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3) 현행 신탁업자 규제는 현행 신탁재산인 실물·금융자산에 부합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 수탁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임.

24)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수행하는 인가단위 신설 시 해당 업과 신탁업 간의 관계, 규제차익 발생 여부 및 해소방안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²⁶⁾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

○ 이에 개정안은 ①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②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③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 다만, 신탁업자의 업무를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금융업 인허가 규제체계의 중요한 예외를 신설하는 것인데,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²⁷⁾에 대한 진입규제는 신고제²⁸⁾로 운영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6. 신탁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탁계약(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을 포함한다)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나. 신탁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관·관리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라.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

되고 있어 신탁업자에 적용되는 진입규제²⁹⁾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선관주의의무³⁰⁾, 운용감시의무³¹⁾, 손해배상책임³²⁾ 등이

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9) 은행 등 종합신탁업자의 최저자기자본은 250억원이며,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①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① 펀드재산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율 체계를 형해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현저히 저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1. 4. 20.>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3.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절한지 여부
4.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6.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신탁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중층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③ 미국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의 가상자산 신탁기관은 신탁업 인가를 취득하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전국은행연합회는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에 따른 제재수단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허용

-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2 신설).

현행	민병덕의원안
<신설>	제166조의2(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제166조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이하 “AP”)“란 집합투자업자에게 ETF의 설정(설립) 또는 해지(해산)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를 의미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7조³³⁾에서는 AP가 담당하는 업무를 ETF의 설정(설립) 또는 해지(해산)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업무, 투자자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업무, ETF가 증권시장 등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 현물 ETF가 허용될 경우, AP가 ETF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한 리스크 헤지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현행법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원칙적으로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방식으로 제한³⁴⁾되기 때문에 거래 효율성 측면에서

3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또는 해산·주식의 일부 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3. 투자자로서가 납부한 금전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등”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라 한다)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매업무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만 해당한다)

불리하며, 호가 정보 등이 공시되지 않아 가격정보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장외에서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제373조³⁵⁾은 누구든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장외에서의 파생상품 경쟁매매”를 허용하려는 것인데, “경쟁매매”는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호가를 경쟁적으로 제출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공개된 시장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함.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거래소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로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사실상 거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가상자산의 도입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선물시장 개설이 필요하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거래소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금융투자협회**는 ① ETF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상자산 선물이 필요하며, 장외거래를 경쟁매매로 진행할 경우 장내거래에 비해 유동성 저하와 비용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장내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② 가상자산 장외경쟁매매 방식의 거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장외파생 중개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소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등의 장내거래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등을 제기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